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건설근로자 인식 분석

Analysis on Awareness of Construction Labors about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Wage Payment

양기남¹ 김광희^{2*}

Yang, Gi Nam¹ Kim, Gwang-Hee^{2*}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Yeongtong-Gu, Suwon-Si, 443-760, Korea ¹

Department of Plant Architectural Engineering, Kyonggi University, Yeongtong-Gu, Suwon-Si, 443-760, Korea ²

Abstract

Wage is a very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the workers' current living but also for the future laboring landscape. As of 2014, it is reported that about 290,000 workers suffer from delay in payment of w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particularly labor-intensive, which implies that delay in payment of wage is a serious problem. Despite this fact, in terms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mprovement of a system to resolve delayed payment in exclusion of labor workers' awareness and thinking.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struction labor' awareness and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based on construction labors' awareness. In the research result, more than 30 percent of all construction labors and managers are never aware of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it appears that the resolution step system needs to be greatly improved.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tilized as fundamental data for th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delayed payment, and the influence of delayed payment on construction labors' safety behavior and productivity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the future.

Keywords : delay in payment of wage, construction labors,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system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가계의 수입원이며 의식주해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임금 체불은 현재의 생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우리나라 체불 임금 건수와 체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4년 한해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011년과 비교 했을 때 약 2만 여명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2천억원의 임금체불액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2]. 이에 반해 종합건설업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2011년 110조에서 2014년 107조로 감소하였다 [3].

건설 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과 일용직 고용이라는 취약점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발생 시 피해는 모두 근로자 몫이다. 또한 건설 근로자들은 극심한 취업 불안정과 열악한 생활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종 업체의 부도, 팀장(작업반장, 십장)의 도주 등의 원인으로 발생된 체불임금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5].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의 발생건수와 체불액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 절차에 대한 실효성의 문

Received : July 14, 2016

Revision received : August 11, 2016

Accepted : September 26, 2016

* Corresponding author : Kim, Gwang-Hee

[Tel: 82-31-249-9757, E-mail: ghkim@kgu.ac.kr]

©2016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All rights reserved.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설근로자 148명과 건설 관리자 27명을 대상으로 체불해소절차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 응답을 한 결과 전체 30% 이상의 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임금 체불해소절차 제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현재 시행되는 임금 체불 절차가 임금체불에 해소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임금체불 해소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실제 건설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임금체불 해소 절차에 대한 건설 근로자들의 인식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에 해소에 대한 절차 인식 및 해소절차 실효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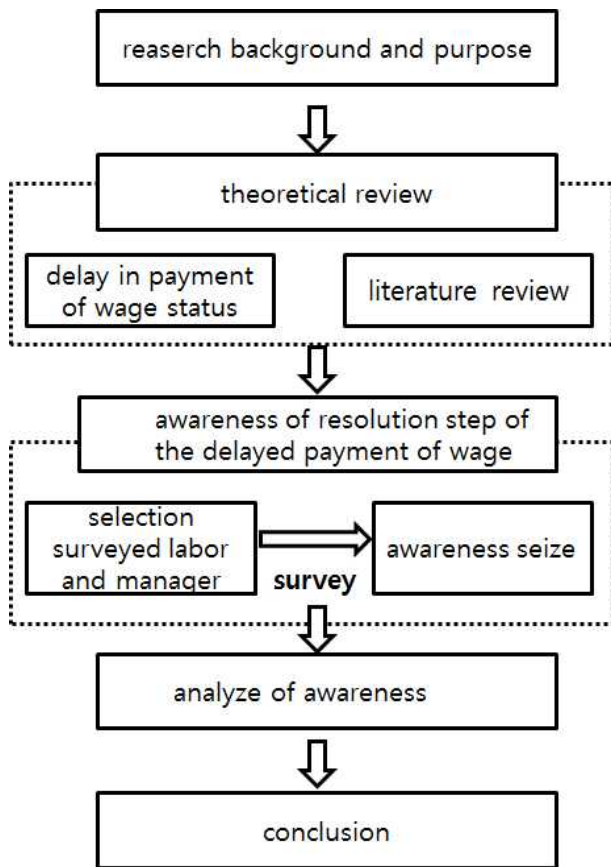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low

연구의 절차는 기존 연구 고찰을 통해 임금체불의 정의와 현황,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를 정의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건설 근로자 및 관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임금체불의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의한다. 또한 임금체불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6].

임금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명시되어있다. 임금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임금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시기는 월급의 경우 월급지급일,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의 경우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다[6].

2.2 임금체불 현황

2011년~2014년도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2]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lay in payment of wage status

years	report number (labors number)	amount(million)
2011	193,536(278,494)	10,874 m
2012	186,624(284,755)	11,772 m
2013	181,182(266,508)	11,930 m
2014	195,783(292,558)	13,195 m

임금체불 현황은 2011년 10,874억에서 2014년 13,195억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임금체불 위한 제도 및 개선을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3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제도로는 지연 의사제도, 반 의사 불벌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생계비 대부제도 등 크게 4가지 제도가 있다[6].

지연의사제도는 민법 또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유도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에 대한 높은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서 2016년 현재 연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고 있다.

반 의사 불벌제도는 사법처리 과정상 발생하는 근로감독관의 비생산적인 업무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금채권 보장제도는 사용자의 변제 자력의 부족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실제로 변제받지 못하거나 혹은 변제받지 못하거나 혹은 변제 받더라도 절차종료까지 상당한 기일을 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별도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생계비 대부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줌으로써 생활 안전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이러한 많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제도의 보완점들에 대한 문제로 임금체불 해소제도에 대한 효율이 낮은 실정이다. 임금체불의 반 의사 불벌제도의 경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처벌을 취소하였으나 일부분의 경우 실제로 임금이 약속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4 임금체불 해소 절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 절차는 Figure 2와 같다.

현재 임금체불 해소 절차는 먼저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한 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한다. 그 후 지급을 명령하게 되고 지급이 된 경우 지급이 종결되지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소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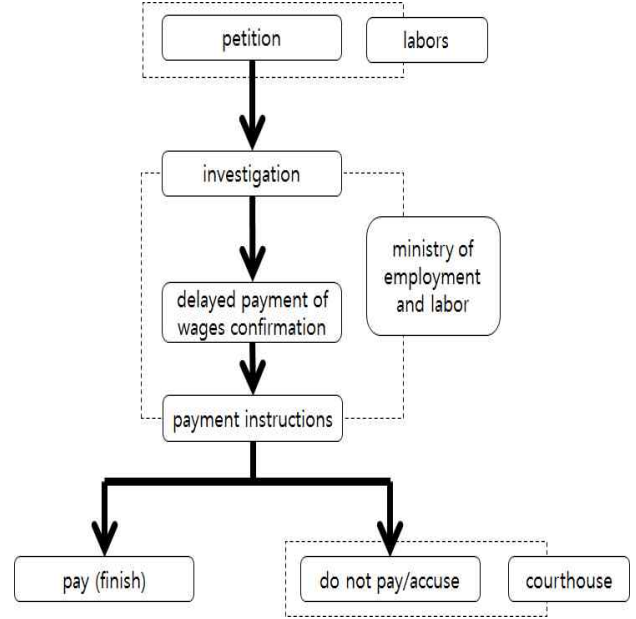


Figure 2.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2.5 기존 연구 고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 문제와 더불어 임금체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만을 강조하는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금체불 고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과 임금체불 해소 절차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연구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노동 집약적 산업인 건설 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임금체불 절차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먼저 임금체불 관련한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Kang[1]은 체불임금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금체불의 실태를 조사하고 임금체불 제도에 관련하여 외국의 임금체불 해소와 우리나라 임금체불 해소제도간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Lee[7]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의사 불벌제도에 대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Park[8]는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제도 현황과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Roh and Shin[9]의 연구에서는 체불임금의 보호와 체불임금에 대한 현행의 구제제도 체불임금 처리 현황 그리고 체불임금의 처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임금체불 현황 연구들은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 한데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신고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임금체불 해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인식 또한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복지수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Yang[4]은 건설업종의 임금체불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원청업체, 하도급자, 건설근로자의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Sim[10]의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특성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현재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공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과 복지수준에 관한 연구 역시 건설근로자의 인식을 고려하기 보다는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 집약적 산업인 건설 산업의 근로자와 관리자의 임금체불 해소의 전반적인 절차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의 임금체불 해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임금체불 해소 절차 실효성 조사

3.1 설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 절차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위하여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현재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해소에 대하여 얼마나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체불 해소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용역 보고서 및 임금체불에 관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조사항목은 임금체불 경험, 임금 체불 진정 횟수, 임금체불 해소 소요기간과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원인 및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 인식 여부 등이다.

2016년 1월~4월까지 3개월간 건설근로자 160명, 관리자 30명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부수는 148부 관리자 27부이다. 또한 설문대상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2 와 같다.

Table 2. Summary of survey overview

	category	labor		manager	
		n	(%)	n	(%)
gender	male	138	93	27	100
	female	10	7	0	0
age	20s	8	5	8	30
	30s	27	18	13	48
	40s	45	30	4	15
	50s and over	68	47	2	7
	frame	21	14	0	0
occupation	finish	10	7	0	0
	electric	48	32	0	0
	equipment	15	10	0	0
	civil	19	13	0	0
	construct manager	0	0	9	33
	safety manager	0	0	2	7
	electric and equipment manager	0	0	3	11
work experience	public affairs	0	0	4	15
	ect	35	24	9	33
	1year	14	9	5	19
	1~10year	53	36	14	52
	11~20year	36	24	6	22
21year over	45	30	2	7	

3.2 설문 결과

3.2.1 임금체불의 주요원인

다음 그림 Figure 3은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원인이다.

건설근로자 37%와 건설관리자 41%가 임금체불의 가장 주된 원인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임금 체불의 원인 중 회사의 경영악화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의 부도 및 폐업이 주된 원인이라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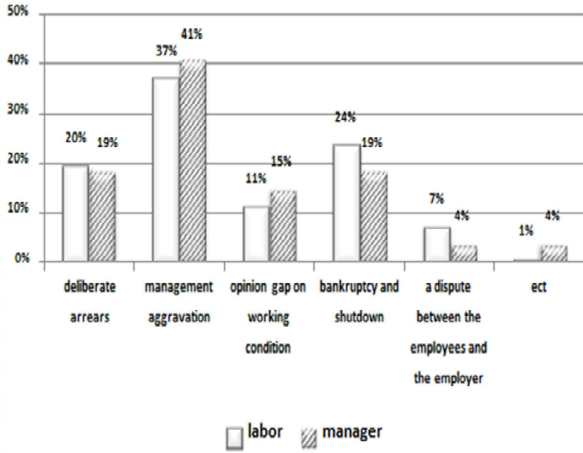


Figure 3. The main reason for delay in payment of wage

3.2.2 임금체불 해소 제도 관련 인식

1) 임금체불의 해소 절차

임금체불 해소 단계 중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가 생각하는 가장 복잡한 단계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Figure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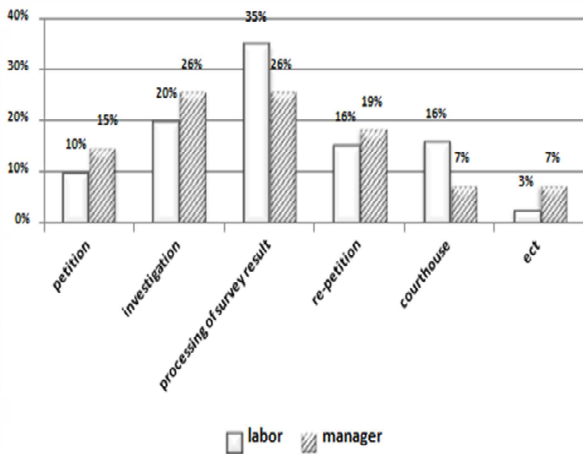


Figure 4. Resolution step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건설근로자 35%와 건설관리자 26%가 임금체불 해소 단계 중 가장 복잡한 단계가 조사결과의 처리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가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단계가 가장 복잡한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2)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인식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로는 지연이자제도, 반의사 불벌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생계비 대부 제도 등이 있다.

다음 Figure 5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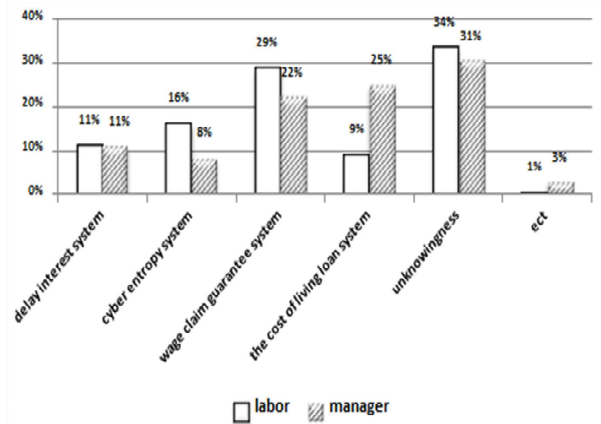


Figure 5. System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 응답자가 근로자의 34%, 관리자의 3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연이자제도, 반의사 불벌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생계비 대부제도 중에서는 건설근로자는 임금 채권 보장제도를 건설관리자는 생계비 대부제도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3)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실효성

건설 근로자 및 관리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응답은 Figure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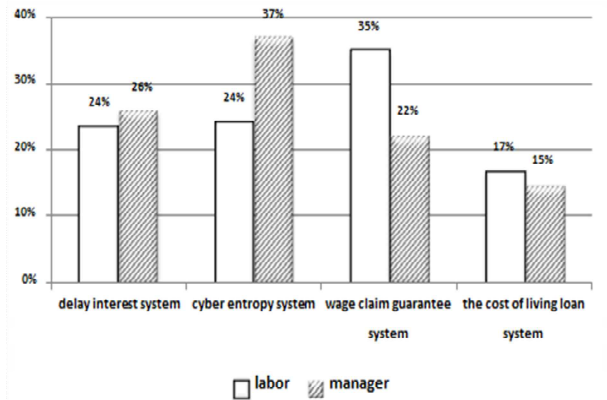


Figure 6. Effectiveness for system of the delayed wage payment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실효성이 가장 높은 제도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이다. 반면 건설관리자는 반 의사 불벌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 높은 순서로는 건설근로자는 반 의사 불벌제도, 지연이자제도 건설관리자는 지연이자제도라고 응답하였다.

3.2.3 임금해소 제도별 개선사항

1) 지연이자제도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것

지연이자제도의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다음 Figure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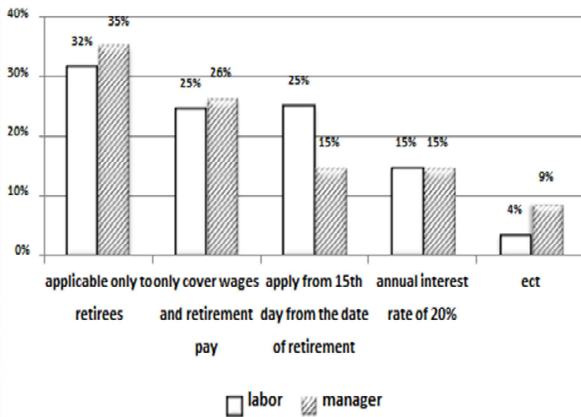


Figure 7. Improvements of delay interest system

설문 결과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점을 가장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응답하였다.

2) 반의사불벌제도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것

반의사 불벌제도의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Figure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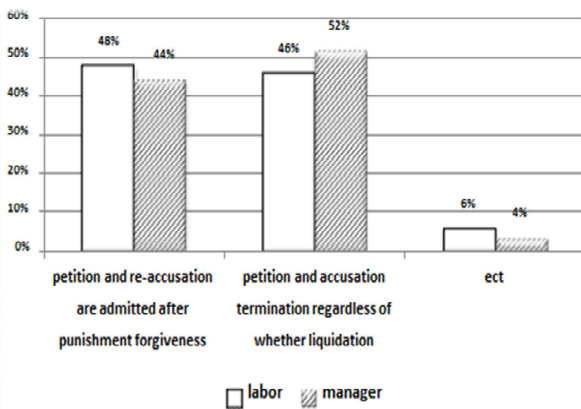


Figure 8. Improvements of cyber entropy system

설문 결과 건설근로자는 처벌 불벌의사 표현 후 재 진정 및 고소 불가한 점을 가장 개선해야 될 점으로 응답하였으며 건설관리자의 경우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진정 및 고소가 종결되는 점을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였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것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중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Figure 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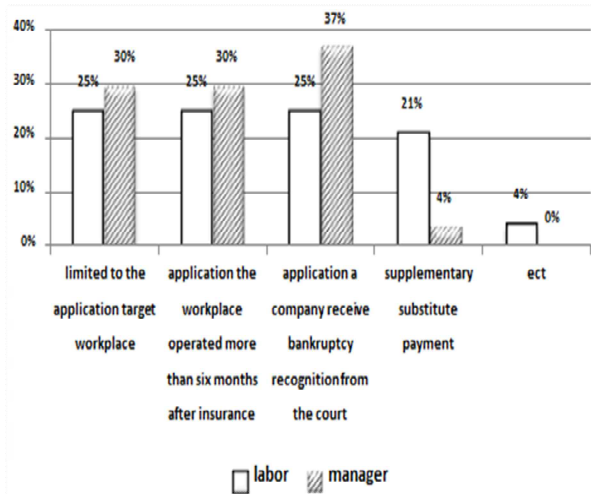


Figure 9. Improvements of wage claim guarantee system

설문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사업주가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 제도가 적용되는 점에 대하여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응답하였다.

4. 임금체불 해소절차 실효성 인식 결과 고찰

4.1 임금체불의 주요원인에 대한 인식 분석

임금체불의 주요원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 회사의 경영악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경영자의 다툼이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으며 이는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모두 임금체불이 경영자의 고의에 의한 체불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체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임금체불 절차 대한 인식 분석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조사 결과 처리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임금이 체불되어 노동부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임금지급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이행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향에서는 조사결과 처리 단계에서 실제 정해진 기간에 임금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조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게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4.3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인식 분석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인식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관리자 모두 30% 이상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는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하더라도 그에 따른 제도를 인식하지 못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며 건설안전교육과 같이 임금체불에 해소를 위한 제도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 교육도 의무적으로 포함 시키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4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실효성 분석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실효성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관리자는 반의사 불벌제도가 가장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처벌 보다는 체불임금이 국가를 통해서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 관리자의 경우 고용주의 처벌여부를 통해 임금을 환수받는 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지연이자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분석

지연이자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퇴직자에게만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재직중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때문에 지연이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재직자의 경우 재직상태에서 임금체불로 고용주를 고발하는 것이 현실상 많은 제약요소가 따르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직자의 경우 또한 지연이자제도를 적용받게 제도가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4.6 반 의사 불벌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분석

반 의사 불벌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는 불 처벌의사 표현 후 재 진정 및 재고소가 불가한 것에 대하여 개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건설 관리자의 경우 청산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자가 불 처벌의사 표현을 하면 그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제도의 강제적인 집행이 없이 고용주에게 체불액을 받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불처벌 의사를 표현해도 그 후 후속적으로 체불액이 지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7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분석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와 건설관리자 모두 법원으로부터 사업주가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 임금채권 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주의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악화되는 별도의 고의적 체납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근로자에게 임금은 근로의욕을 고취 시킬뿐 아니라 근로를 위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에 대한 체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 또한 대두 되고 있다. 본 연구 조사 결과 전체 44%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0% 이상의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가 임금체불 제도 및 해소절차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불 해소 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묻는 설문에 대한 결과로는 전체의 30% 이상의 응답자가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에게만 제도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전체 근로자 중 25%, 관리자 37%가 사업장이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할 점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체불 해소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

하며 개선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제도의 장단점과 문제점분석을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인 임금체불 개선방안을 제시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임금체불의 해소절차의 인식에만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임금체불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임금체불의 해소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더불어 임금체불 또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요인이 건설 근로자의 근로의욕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요 약

2014년 기준 29만명의 근로자가 전체 1조 3천억원의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산업의 특성상 임금체불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연구는 근로자의 인식을 배제한채 임금체불 해소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임금체불 해소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고 근로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전체 근로자 및 관리자의 30% 이상이 임금체불 해소절차 및 해소제도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연구체불 해소를 위한 제도 또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임금체불,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절차, 임금체불 해소 제도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onggi University Research Grant 2015.

References

1. Kang SB, the delayed payment of wage of status and Policy task, Seoul: Korea Labor Institute; 2012, 131 p.
2. The delayed payment of wage of status[Internet]. South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2015 Nov 5]. Available from: <http://www.moel.go.kr/>.
3. Construction main statistical data[Internet]. South Korea: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 [2016 Mar 9]. Available from: www.cak.or.kr/.
4. Yang SH, A Research Paper On Improving the Problem of the Delayed Payment of Wages [Master's thesis]. [Seoul(korea)]: Korea University; 2007, 83 p.
5. Eom JC, Review on the wage protection system for workers in the construction subcontract, The Journal of labor law, 2014 Aug;31(1):141-74.
6. The Labor Standards Act[Law][Internet]. South Korea: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July 1].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7. Lee CH, A Study on the Payment of Overdue Wages and Wage Claim Guarantee System [Master's thesis]. [Mokpo (Korea)]: Mokpo University; 2012, 130 p.
8. Park GY,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verdue Wage System[Master's thesis]. [Busan (Kore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2013, 115 p.
9. Roh BH, Shin HG, Institutional Review on Help Program for Overdue Wage,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2011 Nov;(53):659-85.
10. Sim GC,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ing Scheme of Construction Workers 'welfare system [Master's thesis]. [Seoul (Korea)]: Korea University; 2014, 74 p.